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	**보도자료**	http://www.mosf.go.kr http://www.mke.go.kr http://www.ftc.go.kr http://www.smba.go.kr

'10년 9월 29일(수) 11:30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

기획재정부	산업경제과장	백승주,	사무관	정남희 (02-2150-4532)
지식경제부	기업협력과장	이원주,	사무관	이채원 (02-2110-5169)
공정거래위원회	하도급개선과장	신동열,	사무관	한경종 (02-2023-4491)
중소기업청	정책총괄과장	권대수,	서기관	조재연 (042-481-4540)

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성장 다짐

- 정부·업계,「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」마련 -

- 中企**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,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**
- **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체계 구축, 2·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확산**
- **협력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기업의 투자재원 추가조성**
- **민·관「동반성장 추진 점검반」구성, 이행실적 매월 점검**

□ 정부와 대·중소기업계는 9.29(수) **이명박 대통령** 주재로 개최된 **'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***(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)'에서 우리 경제의 **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**하기 위한 **「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」**을 **수립·발표**하였음

* 30대 그룹 등 주요 대기업 CEO, 1~3차 중소협력사 대표 60여명, 5대 경제단체장, 전 국무위원 및 청와대 수석급 이상 전원 등 총 150여명 참석

○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(장관 : 최경환)와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: 정호열)는 **「대·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대책」을 발표하고,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**가 **대기업 및 중소기업계가 마련한 동반성장 추진계획**을 각각 발표하였음

□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**▲ 공정거래 질서**의 확립, **▲** 중소기업 **사업영역의 보호** 및 **동반성장 전략의 확산, ▲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** 지원, **▲ 지속적인 추진·점검 체계 구축** 등 **4대전략, 15개 정책과제를 제시**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

추진전략	정책과제
공정거래 질서의 확립	**①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**: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조정 신청권 부여 **②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**: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**③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확대** **④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** **⑤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시강화**
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	**⑥민간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** **⑦동반성장을 1차에서 2·3차로 확산**: 동반성장투자액 세액공제(7%), 확산 인프라 구축 **⑧소재대기업과 수요중소기업간 협력**: 석유화학 가격예시제 실시, 철강재 안정적 확보지원 **⑨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**
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	**⑩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**: 경영·회계 투명성 강화, 상시적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도입 **⑪중소·중견 성장역량 강화**: 생산성·R&D·산업인력 등 핵심역량 확충 지원 **⑫인력·자금 등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** **⑬산업단지 환경 개선**
추진·점검 체계 구축	**⑭민간「동반성장위원회」구성, 동반성장지수 공표** **⑮「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」 및 「동반성장 추진점검반」 구성**

〈 추진 배경 : 미래 산업발전 전략으로서의 동반성장 〉

□ **글로벌 기업환경에 대응**하기 위한 **경쟁력** 확보 및 **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필수요건**으로 **동반성장 전략 추진이 필요**한 시점임

○ 특히, 경쟁의 단위가 **개별기업에서 기업 네트워크로 전환**되면서 네트워크 경쟁력이 중요

□ 그러나, 그간 일부 대기업과 정부의 추진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의 **전반적인 실효성과 지속성은 부족한 상황임**

○ 업계 현장에서는 **불공정거래 관행**이 아직도 일부 남아있고,

* 중소기업 실태조사('10.7월) 결과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관련 애로를 호소

○ 그간의 대기업의 지원이 1차 협력사·자금 융자 위주로 이루어져 **2·3차 협력사 등 산업생태계 전반으로의 확산이나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효과가 부족**한 실정임

○ 또한, **대기업의 사업확장·진출**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**경영여건 악화 등도 함께 해결**할 필요

□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동반성장 **추진 필요성**에 대해 **공감**하고, **동반성장 전략이 산업전반에 뿌리**내릴 수 있도록 **금번 대책 및 추진 계획**을 각각 마련, 발표하게 됨

○ **정부**는 기업들이 **자발적으로 상호 신뢰** 속에서 **협력성과**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**기반조성**에 중점을 둠

○ **대기업**은 **동반성장을 선도하는 중심기업**으로서 확고한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, 협력사 지원 추진에 중점

○ **중소기업**은 **역량있는 파트너**로서의 확실한 자기혁신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

〈 전략 Ⅰ :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〉

□ 일방적 대기업 규제나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**시장경제원리**를 바탕으로 대·중소기업간 **공정한 거래**를 통해 **동반성장의 토대**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하였음

□ 먼저,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'납품단가' 문제와 관련,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합리적으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**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보완**하는 한편, **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을 방지**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음

① 우선, 중소기업의 조정신청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**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**하는 한편, **Fast Track 제도**를 **도입**하여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

- 아울러, **동반성장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납품단가 조정 실적**이 **우수**한 기업에 대해서는 **과징금·벌점 감경** 등 **인센티브**를 **확대**함으로써, 기업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문화를 확산할 계획임

②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**입증책임을 전환**하고, **감액 사유와 산정기준** 등을 **명시**한 **서면을 교부**하도록 함으로써, 객관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

③ 아울러 **단가인하(CR) 보다는 동반성장 실적에 중점**을 두도록 실적평가시스템의 개선을 동반성장 협약을 통해 유도할 계획임

□ 구두발주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, **공정한 하도급계약서 작성 문화를 정착**시키고자 함

○ 국내외 하도급계약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자동차, 전자 등 주요 **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** 보급하는 한편, 충분한 기간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**발주 예정사실 및 물량을 통보**하는 **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발주**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임

□ **동반성장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술자료 공유는 허용**하되, **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탈취·유용 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** 장치를 마련하였음

① 하도급업체에게 원가 등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**목적**과 **대가, 비밀유지, 권리 귀속**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, 원가자료 확인 명목으로 **일방적**으로 **사업장**을 **실사하는 행위를 금지**함으로써 **중소기업**의 **기술보호를 강화함**

② **기술**탈취·유용행위가 발생한 경우, **고의·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**을 원사업자에게 부여하고, **법원이 직접 손해액을 인정**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함

□ **대기업부터 최하위 협력사까지 원활한 대금지급 및 동반성장 시스템을 정착**시키기 위해, 2차 이하 협력사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함

① 그간 하도급법 적용이 제외되던 **1차↔2차, 2차↔3차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고,** 기존의 **대기업↔1차 협력사 중심의 협약 체결**을 **1차↔2·3차 협력사로 확산**할 계획임

② 또한, 동반성장 협약에 따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법상 대금지급의무 준수 등을 점검할 경우 **'부당한 경영간섭' 규정**의 **적용**을 **배제**하여, **2차 협력사 지원실적에 따라 1차 협력사를 차등 지원**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
□ 대형유통업체와 납품·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도 상존하고 있어,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할 계획임

①**「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**(가칭)**」**을 **제정**하여 부당반품,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, **50여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**를 대상으로 **불공정행위**를 **조사**할 계획임

② 아울러, 판매수수료, 판촉비용 등과 관련한 불합리한 계약조건 개선을 위해 백화점, TV 홈쇼핑 등 업종별 **표준거래계약서**를 **제정**하여 보급할 예정임

〈 전략 Ⅱ :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〉

□ **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**할 수 있는 분야를 **민간 중심**으로 **선정**하여, **대기업과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**키로 함

① 먼저 현재의 **사업이양권고 업종·품목***을 **전면 개편하여 「중소기업 적합 업종·품목」을 설정**하되, 사회적 합의 의미를 가지도록 **민간 「동반성장위원회」에서 결정**하여 운영

* 현재 582개 업종·품목에 대하여 대기업 사업이양을 권고(중기청 고시)

② 「중소기업 적합 업종·품목」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·이양 실태를 **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·공표**함으로써 **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**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되,

- 정부는 **사업조정제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조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**할 계획임

□ 1차 협력사 위주의 동반성장을 **2·3차** 등 全공급망으로 확산키로 함

① **협력사 경쟁력 제고**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촉진*을 위해 「동반성장 프로그램」**에 대한 **투자세액 공제(7%) 신설**

* 삼성전자·현대차·LG전자·SK텔레콤·포스코, '12년까지 1조원의 투자재원 마련계획
** 기술개발, 생산성향상, 인력양성, 해외마케팅 등 협력사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

② 정부의 **공동 기술개발 지원** 확대*, 2·3차 협력사에 대한 **「생산성 향상 프로그램」** 등을 추진할 계획임 ('11년 시범사업)

*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확대('10년 600 → '11년 800억원)

③ **2·3차** 협력사 **지원모델** 발굴 및 **「업종별 동반성장 추진전략」** 수립 등을 통해 협력유형과 업종에 적합한 확산 인프라를 구축키로 함

④ **「특별 보증 프로그램」의 2·3차 협력사 지원을 확대**하고,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 신설키로 함

□ 동반성장을 **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간 협력**으로 확산키로 함

○ **석유화학** 업계의 '원자재 공급 후 가격결정 관행' 시정을 위해 **「1개월 가격예시제」를 도입·운영**하고,

○ 중소기업이 **철강재**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 대기업의 **중소기업 직접 판매량 확대 및 가격인상 자제를 유도**할 계획임

〈 전략 Ⅲ :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〉

□ 중소기업이 **역량있는 파트너로 성장**할 수 있도록 경영투명성 강화, 구조개선, 역량확충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, 현장의 인력·자금 등 현장애로 해소도 병행할 계획임

○ 중소기업의 경영선진화 지원을 위해 非외감 중소기업이 **자발적으로 외부감사**를 받은 경우 **정책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** 신·기보 **보증료 인하**(0.1%p)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,

- 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

○ **중소기업 생산성향상 대책**을 수립(10월)하고, **국가 R&D의 중소·중견기업 지원비중 확대** 및 **산업인력양성시스템 선진화 등**을 통해 **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충을 적극 지원**해 나가기로 하였음

○ 또한, 중소·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**「녹색 중소·중견기업 육성전략」을 수립**하고, **중소기업지원 정책을 혁신성·성장성 위주로 개편**해 나갈 계획임

□ **중소기업의 시급한 인력난과 자금난 완화**를 위하여,

○ **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를 신축적**으로 운영('10 도입쿼터 24,000→34,000, 제조업 19,500→28,100명 既확대)하고, **고용절차를 개선**하는 한편,

- **출연연 연구인력 파견 확대 및**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

○ 또한,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**2천억원을 추가 조성**(9월 완료)하고, 자금·보증 지원심사시 **성장성 등이 반영**될 수 있도록 **창구 심사기준을 보완·적용**할 예정임

□ 회색빛 공단시대를 마감하고 배움과 문화가 어우러진 첨단 **「QWL**(Quality of Working Life) **밸리 프로젝트」를 추진할 계획임** (10월중 별도대책 추진)

○ 노후화된 4개 산업단지(시화·반월, 남동, 구미, 익산)를 대상으로 기숙사· 문화·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

〈 전략 Ⅳ : 동반성장 지원·점검 체계 구축 〉

□ 동반성장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, 산업생태계 문화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**민간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·점검 시스템을 구축**할 계획임

① **민간주도의 동반성장 추진의 구심체**로서,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**「동반성장위원회」**를 발족(12월)하여, 내년부터 **대기업이 발표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·발표**하고,

② **기업별 「동반성장지수(win-win index)」를 산정하여** 공표할 예정임

- 동반성장지수 평가 **우수기업에 대해 포상**과 정부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, **부진한 기업**에 대해서는 **정부사업 참여시 불이익**을 부여할 방침임

③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도 항상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

- **「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」를 설치**(12월)하여 온라인상에서 동반성장 관련 애로(하도급, 지원시책 등) 창구로 운영하고,

- 전국 산업단지 등에도 수시로 기업들의 애로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**「동반성장 지원센터」를 설치**할 예정임

- 신고된 사항 중 **불공정거래 등 법위반 사항**에 대해서는 공정위 직권조사와 연계하여 **확실한 제재**를 해 나갈 계획임

- 또한 동반성장 관련 시책 추진상황을 매월 **「동반성장 추진점검반**(반장: 경제수석, 반원: 관계부처 차관 및 전경련·중기중앙회)」 **에서 점검**하는 한편, 그 결과를 **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「국민경제대책회의」에 보고**할 계획임

< 별첨자료 >「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」